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26회 정례회

# 검 토 보 고 서

2018. 12. 11 (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 원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검토보고자 : 전문위원 이주현)

### 1. 회부경위

- 제안자 : 신종갑 의원 외 9인
- 제안일 : 2018. 11. 19
- 회부일 : 2018. 11. 20 (의안번호 : 18-125)

### 2. 제안이유

우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사업추진의  
근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와 사용자의 책무(제3조~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제5~7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
  -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 7개분야 지원사업 실시
  - 양성평등 기금을 활용 지원사업의 실시 등
- 업무의 위탁(제8조)

※ 조례안은 본칙 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예산조치 : 향후 사업추진 필요예산 확보필요

○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기간:'18.11.19일~'18.11.23)

○ 규제사항 유무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 평가 : 권고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이견 제정 조례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사무는 2008.6.5일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되므로 우리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별첨 1)
- 참고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는 서초구와 광진구 등 10개구,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의 경우 충북 진천 및 경기 화성시 등 84개 등 전국에 총 74개 시·군·구가 우리구 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이견 조례안은 본칙 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된 대체로 단순한 조문으로 다른 시군구의 조례를 참고한 작성한 것으로 조례로서의 구성체계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아울러, 조례안의 용어와 정의 및 각 조문별 내용 등을 상위 법령 및 서울시 관련 조례와 비교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이견 조례 제정후 실현가능성 검토를 위해 제출된 2019년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 취·창업 지원 사업”으로 947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견 조례안 제7조(지원 사업 등) 제2항에 따르면 사업비로 가정복지과 소관 21억 3676만 7천원 규모의 여성복지 관련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예산확보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별첨2)

- 아울러, 일자리경제과 등 취·창업 관련 부서와 소관 위탁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 사업추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이견 조례안이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임을 고려하여 집행부와 법령상, 예산상, 행정상 등 관련 분야에 대해 실현 가능성 유무와 보완사항 유무 등에 대해 별도 협의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 특히, 지난 제225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시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창업” 문제에 대해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는 등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이 많은 만큼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조례 제정후 사업추진 상황이나 여건의 변동,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조례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적기적시에 조례를 개정하는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참고자료

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매.
2. “양성평등 기금” 2019년도 운용계획 1매.



## [참고 자료 1]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701호, 2017. 3. 21,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2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9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2]

“양성평등 기금” 2019년도 운용계획

기금명	2018년도말 조성액 ①	2019년도 기금운용		2019년도말 조성액 ④ = ① + ② - ③	증감 ⑤ = ④ - ①
		수입 ②	지출 ③		
양성평등 기금	2,136,767	38,850	38,850	2,136,767	0

※ 양성평등 기금사업의 목표 : 마포구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복지 증진, 양성평등 촉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미영리민간단체의 지원 등